(20) 지방세 지출보고서(2019년 결산실적)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9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33,948,943,970
	비과세	27,593,590,470
	감면	6,355,353,500
지방세 징수액(B)		208,834,313,330
비과세·감면율(A/A+B)		14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33,948,943,970	100.00
1	일반공공행정	15,590,113,130	45.92
2	공공질서 및 안전	162,716,450	0.48
3	교육	2,178,817,480	6.42
4	문화 및 관광	808,560,890	2.38
5	환경보호	7,481,090	0.02
6	사회복지	1,767,818,800	5.21
7	보건	73,444,280	0.22
8	농림해양수산	311,960,910	0.92
9	산업·중소기업	343,311,430	1.01
10	수송 및 교통	22,737,410	0.07
11	국토 및 지역개발	1,461,807,550	4.30
12	과학기술	0	0.00
13	국가	11,067,003,610	32.60
14	외국	13,595,250	0.04
15	기타	139,575,690	0.41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33,948,943,970	100
	보통세		33,948,943,970	100
		주민세	694,919,670	2
		재산세	31,754,630,950	94
		자동차세	1,499,393,350	4
		지방소득세	-	-
		담배소비세	-	-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계	28,320,431,880	33,948,943,970	5,628,512,09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0,501,611,350	15,022,939,470	4,521,328,12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0,396,500	11,031,390	634,89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57,621,630	60,978,200	3,356,57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440,476,440	468,982,730	28,506,29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5,586,850	26,181,340	594,49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379,510	391,260	11,75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60,858,940	162,325,190	1,466,25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24,379,920	12,313,270	-12,066,65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364,093,570	711,207,980	347,114,41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0,136,890	82,106,440	61,969,55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254,637,940	1,344,302,370	89,664,43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8,737,810	28,887,420	20,149,61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705,191,900	780,497,870	75,305,970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4,679,190	5,220,510	541,32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007,060	10,250,900	6,243,84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741,920	733,220	-8,70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207,150	11,858,390	651,240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28,018,760	7,481,090	-20,537,6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62,900,000	75,150,000	12,25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772,640,400	751,403,520	-21,236,88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320,290	1,302,310	-17,98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70,828,520	163,376,680	-7,451,84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5,293,750	11,791,570	-3,502,18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1,299,260	172,200,140	-9,099,12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76,667,820	474,454,260	97,786,44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5,083,650	7,644,280	2,560,63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556,200	1,091,160	534,96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96,519,030	106,032,640	9,513,610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3,288,460	3,372,240	83,78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569,100	73,444,280	11,875,18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0,933,110	77,863,670	66,930,5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4,840,560	16,590,230	1,749,67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7,763,630	21,223,940	3,460,31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9,866,370	22,260,110	2,393,74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7,860	21,330	3,47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50,203,310	167,760,590	17,557,28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7,065,130	6,241,040	-824,09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534,900	16,380,840	-154,06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3,683,150	12,466,020	-11,217,13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73,920	4,635,080	4,361,16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12,716,590	21,056,820	8,340,23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94,216,770	288,772,670	-5,444,10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3,315,170	20,525,580	-12,789,59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387,410	2,211,830	-175,58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4,290	27,045,950	27,021,66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71,101,400	298,895,840	-172,205,56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013,162,150	851,984,200	-161,177,9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286,092,780	283,881,560	-2,211,220
국가에 대한 비과세	10,429,518,730	11,066,356,660	636,837,93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646,420	646,950	530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185,250	185,250	0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30,000	13,410,000	13,380,00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98,465,150	101,106,220	2,641,07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7,550,030	6,616,100	-10,933,93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3,311,680	4,187,080	875,40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7,030,200	17,518,430	488,23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492,000	493,870	1,87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8,274,110	9,653,990	1,379,880

Ⅱ.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5,590,113,13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소 계	15,022,939,470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64,629,000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	재 산 세	14,952,229,4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자동차세	6,080,980
		지방소득세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1,031,390
		재 산 세	11,031,390
		지역자원시설세	
		-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60,978,2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540,000
		재 산 세	60,438,200
		지역자원시설세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468,982,73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468,982,73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26,181,3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6,181,34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62,716,450
6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391,260
		취 득 세	
		재 산 세	391,260
7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	**소 계**	162,325,1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레 저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162,325,190
		지방소득세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교 육		합 계	2,178,817,480
8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711,207,980
		주 민 세	126,209,750
		재 산 세	584,998,230
		지방소득세	
9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82,106,440
		재 산 세	82,106,440
		지역자원시설세	
		-	
1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344,302,3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75,502,750
		재 산 세	1,268,799,620
		지역자원시설세	
		-	
11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12,313,270
		주 민 세	
		재 산 세	12,313,270
1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소 계	28,887,4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취 득 세	
		재 산 세	28,887,420
		지역자원시설세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808,560,890
1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780,497,870
		주 민 세	64,680,500
		재 산 세	715,817,370
		지방소득세	
14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5,220,510
		주 민 세	5,220,510
		-	
15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10,250,9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0,250,900
		-	
16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 계**	733,220
		취 득 세	
		재 산 세	733,220
		레 저 세	
17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소 계**	11,858,390
		취 득 세	
		재 산 세	11,858,390
		지역자원시설세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7,481,090
18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7,481,090
		취 득 세	
		재 산 세	7,481,09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1,767,818,800
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 (인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 지방세법 7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 계**	75,150,000
		주 민 세	75,150,000
		-	
		-	
		-	
		-	
		-	
20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751,403,520
		취 득 세	
		자동차세	751,403,520
		-	
21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302,310
		취 득 세	
		재 산 세	1,302,310
		지역자원시설세	
22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소 계**	106,032,6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4,162,4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재 산 세	91,870,180
		지방소득세	
		-	
23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163,376,680
		취 득 세	
		재 산 세	163,376,680
		-	
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11,791,570
		취 득 세	
		재 산 세	11,791,570
		지역자원시설세	
		-	
25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3,372,2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3,372,240
		-	
2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172,200,1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234,670
		자동차세	170,965,470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2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소 계	474,454,260
		취 득 세	
		재 산 세	474,454,260
		지역자원시설세	
		-	
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7,644,28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644,280
		-	
29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제주)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	소 계	1,091,160
		취 득 세	
		재 산 세	1,091,160
		지역자원시설세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보건	합 계	73,444,280
3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73,444,2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73,444,280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11,960,910
31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소 계	77,863,6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67,202,750
		재 산 세	10,660,920
		자동차세	
		-	
32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16,590,2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6,590,230
		-	
3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소 계	21,223,9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재 산 세	21,223,940
3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22,260,110
		재 산 세	22,260,110
		-	
35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 · 유통 · 가공용 부동산 취득 ·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21,3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1,330
3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 ·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소 계**	167,760,5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67,760,590
3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6,241,040
		취 득 세	
		재 산 세	6,241,040
		-	

9. 산업 · 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산업 · 중소기업	**합 계**	343,311,430
3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소 계**	16,380,8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6,380,840
		지방소득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39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12,466,02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12,466,020
		-	
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4,635,080
		취 득 세	
		재 산 세	4,635,080
		담배소비세	
		-	
41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장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소 계**	21,056,82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1,056,820
		-	
42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소 계**	288,772,670
		취 득 세	
		자동차세	288,772,670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22,737,410
43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20,525,580
		취 득 세	
		주 민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0,525,580
		-	
44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2,211,830
		자동차세	2,211,830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461,807,550
45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 계**	27,045,950
		취 득 세	
		재 산 세	27,045,950
		-	
4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	**소 계**	298,895,840
		취 득 세	
		재 산 세	298,895,84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4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851,984,2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851,984,200
		-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283,881,560
		재 산 세	283,881,560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0
49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4의2)	**소 계**	0
		재 산 세	0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 가		합 계	11,067,003,610
50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11,066,356,6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85,993,750
		재 산 세	10,866,579,060
		자동차세	13,783,850
51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646,950
		재 산 세	646,950
		지역자원시설세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외 국		합 계	13,595,250
52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소 계	185,250
		주 민 세	
		자동차세	185,250
		지방소득세	
53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③ 2호)	소 계	13,410,000
		주 민 세	13,410,000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기 타		합 계	139,575,690
54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	소 계	6,616,100
		취 득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재 산 세	6,616,100
		지역자원시설세	
5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101,106,22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101,106,220
		-	
5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4,187,08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4,187,080
		지역자원시설세	
57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7,518,430
		취 득 세	
		재 산 세	17,518,430
		-	
58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493,87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493,870
5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9,653,990
		주 민 세	2,218,200
		재 산 세	4,877,420
		자동차세	2,558,370